의 안 번 호	2443	【울산광역시 중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】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5. 6. 30.(월) 이명녀 의원 외 9명

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5. 6. 30.(월)

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5. 7. 16.(수)

2. 제안설명 요지(이명녀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혼인, 임신, 육아 등의 사유로 경력이 중단되었거나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및 지속을 지원하고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을 지원하여 지속적인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

나. 주요내용

○ 경력보유여성등의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(안 제2조 ~ 제3조)

○ 시행계획 수립,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(안 제4조 ~ 제5조)

○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(안 제6조)

○ 협력체계 구축, 업무의 위탁, 포상(안 제7조 ~ 제9조)

다. 근거법규

○「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」제3조

○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

○「울산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」제4조

○「울산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」제16조, 제17조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김순정)

○ 최근 여성의 경력 ‘단절’이라는 부정적 의미의 용어에서 ‘보유’라는 긍정적 의미의 용어로 전환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. 본 조례안에서는 ‘경력단절여성’이라는 용어 대신 ‘경력보유여성’이라는 긍정적 의미의 용어를 사용하여 사회적 인식 변화와 재취업을 준비하는 여성들에게 자신감을 실어주고자 함

○ 많은 여성들이 혼인, 임신, 육아 등의 사유로 경제활동을 중단 후 재취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, 이를 여성의 경력단절이 개인의 단순한 선택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경력보유여성등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

○ 본 조례안은 혼인, 임신, 육아 등의 사유로 경력이 중단되었거나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지원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직업교육, 컨설팅, 취업 지원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

○ 제반 규정을 검토한바,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근 거 법 규

「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」
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,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때에는 여성의 생애주기,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
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 촉진을 지원하여야 하며, 남녀고용평등의 실현에 방해가 되는 모든 요인을 없애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·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노력을 지원하여야 하며 일·가정의 양립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고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「울산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」

제4조(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해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구·군, 관련 기관·법인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「울산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」

제16조(여성능력개발 효율화) 구청장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제17조(여성의 취업·창업 활성화) 구청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성 친화적 기업 증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